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8-15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 나. 시민축구단이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고,
- 다.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효력을 상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및 부대시설 위탁관리(제3조제3항)
 - 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

나.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

-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력을 상설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시의회 문교사회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68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3746호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u>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② (생략) <u><신설></u> 부칙 <u>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u>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u>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부칙 <u><삭제></u>